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, 제19조(용도변경), 제20조(가설건축물) 등을 위반한 건축주(행위자)에 대하여 행정처분(시정명령, 사전통지, 이행강제금 부과 등)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1.

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

- 1. 제 목 :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8. 21. ~ 2026. 9. 10. (20일간)
- 3. 공시송달대상자

성명 (법인명)	주 소	처분명	내 용	송달불능 사유
이명*	임실군 신평면 원천2길**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	- 서신동 948-16 - 조립식판넬/판매시설(3)/12㎡ - 철파이프조/판매및영업시설(3)/11.25㎡	폐 문 부재
김영*	전주시 완산구 인정3길**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	- 중화산동2가 588 - 조립식판넬조/주거시설(3)/9.18㎡	폐 문 부재
이창*	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8길**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	- 삼천동2가 22-5 - 조립식패널조/판매시설(3)/15㎡	폐 문 부재
고경*	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**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	- 서신동 957-2 - 조립식패널조/판매시설(3)/3㎡	폐 문 부재
송훈*	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**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	- 대성동 312외 1 - 철파이프조/창고시설(3)/219.5㎡ - 컨테이너조/판매시설(3)/36㎡	폐 문 부재

4. 공시송달내용

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(☎063-220-5403)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